

□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(고엽제 후유증 등의 결정기준)

구분	질병명
고엽제 후유증 (제5조제1항)	- 비호지킨림파선암(非호지킨淋巴腺癌) - 연조직육종암(軟組織肉腫癌) - 염소성여드름(鹽素性여드름) - 말초신경 병(末梢神經病) -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(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) - 호지킨 병 - 폐암(肺癌) - 후두암(喉頭癌) - 기관암(氣管癌) - 다발성골수종(多發性骨髓腫) - 전립선암(前立腺癌) - 버거 병 - 당뇨병(糖尿病). 다만,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. - B-세포형 만성 백혈병(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) - 만성골수성백혈병(慢性骨髓性白血病) - 파킨슨병. 다만,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. - 허혈성 심장질환 - AL 아밀로이드증 - 침샘암 - 담낭암(담도암을 포함한다) - 갑상샘기능저하증 - 다발성경화증(多發性硬化症) - 방광암 -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

□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(고엽제 후유증 등의 결정기준)

구 분	질병명
고엽제 후유의증 (제5조제2항)	1. 일광과민성피부염(日光過敏性皮膚炎) 2. 심상성건선(尋常性乾癬) 3. 지루성피부염(脂漏性皮膚炎) 4. 만성담마진(慢性蕁麻疹) 5. 건성습진(乾性濕疹) 6. 중추신경장애(中樞神經障礙). 다만, 제1항 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 및 같은 항 제24호의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은 제외한다. 7. 뇌경색증(腦硬塞症) 8. 다발성신경마비(多發性神經麻痺) 9. 삭제 <2024. 2. 13.> 10.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(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) 11. 근질환(筋疾患) 12. 악성종양(惡性腫瘍). 다만, 제1항의 고엽제 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. 13. 간질환(肝疾患). 다만,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. 14. 삭제 <2024. 2. 13.> 15. 고혈압(高血壓) 16. 뇌출혈(腦出血) 17. 삭제 <2012. 1. 17.> 18. 동맥경화증(動脈硬化症) 19. 무혈성괴사증(無血性壞死症) 20. 고지혈증(高脂血症) 21. 삭제 <2012. 1. 17.>
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(제5조제3항)	1. 척추이분증(脊椎二分症). 다만, 은폐성(隱蔽性)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. 2. 말초신경병(末梢神經病) 3. 하지마비척추병변(下肢麻痺脊椎病變)